

재 정 경 제 부

우427-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전화 503-9219 / FAX 503-9073
법인세제과 과장 : 성 수 용 사무관 : 김 병 철 담당자 : 이 세 협

문서번호 법인 46012-196

시행일자 '2003. 11.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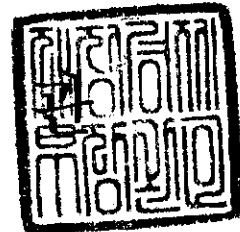
수신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-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
박 근 용 귀하

제 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

2003.10.27.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
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불임 :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면제와 관련된 정보공개 1부. 끝.

재 정 경 제 부 장



<붙임>

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면제와 관련된 정보공개

1. 증권거래소 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 관련 법인세의 감면을
규정한 법령의 신설 및 개정 사유

- ① 1990년 12월 31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제1항 신설
및 시행령 제66조 신설사유
- ② 1993년 12월 31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9조 조항변경
및 개정사유
- ③ 1996년 12월 31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9조 개정사유
- ④ 1998년 12월 31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9조 개정사유
- ⑤ 2000년 1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개정사유
- ⑥ 2001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개정사유

□ 회사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자산재평가
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 상장시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한
법령의 신설 및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1990년 법령 신설 및 개정사유

- 기업공개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
1988년부터 1990년까지 회사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
실시한 기업이 상장시한(재평가일부터 2년) 내에 상장하는
경우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함
- 1990년말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이미 실시한
법인들에 대하여 회사상장시한을 연장한 사유는 재평가를
실시한 법인들이 일시에 모두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물량공급의
과다로 발생할 증시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

②~⑥ 1993년 · 1996년 · 1998년 · 2000년 · 2001년 법령개정사유

○ 1990년 이후 증시안정을 위한 기업공개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 당시의 기업공개요건은 충족하나 강화된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제상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

- 이러한 기업이 강화된 기업공개요건을 갖추어 상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

○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른 주식시장의 여건변화 및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시 상장차익에 대한 배분문제 미해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

-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의 기업공개가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여 회사상장시한을 연장함

2. 2003년 10월 24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수 및 납부유예 법인세 총액

□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회사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후 2003년 10월 24일 현재 상장하지 않은 법인 수는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15개로 파악되었습니다.

□ 그러나, 상기 법인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장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

○ 자산재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법인은 상기 시한 내에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

-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가 고지하기 전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등
-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의 상장의지 및 자산재평가 취소 여부 등 향후 불확실한 변수에 따라 징수세액은 상당히 달라지므로
- 정부에서 2003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납부유예한 총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2003년 10월 24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명단 및 납부유예 법인세액

- 귀하가 요청하신 정보는 개별 기업의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(비밀유지)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(비공개대상정보)제7호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1990년 12월 31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1항 및 시행령 제66조의 적용을 받고 있던 법인의 수 및 납부유예 법인세 총액

-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1990년 12월 31일 현재 260여개로 파악되었습니다.

- 그러나, 상기 기업중 1990년 12월 31일 현재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23조를 적용받게 된 법인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

○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던 1990년 10월말 현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중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80여개로 확인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1990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기업의 납부유예 총액은 공개청구 항목 2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사유로 명확히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1990년 12월 31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1항 및 시행령 제66조의 적용을 받고 있던 법인의 명단 및 납부유예 법인세액

□ 귀하가 요구하신 정보는 개별 기업의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(비밀유지)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(비공개대상정보)제7호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